대구구치소 공고 제2026-29호

2026년도 제4회 공무직근로자(조리원) 채용 공고

대구구치소에서 근무할 공무직근로자(조리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11월 10일

대구구치소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1. 채용분야 및 인원

근로형태	채용분야	선발예정인원	채용예정일	근무지
공무직 근로자	조리원	1명	'27. 1. 4.	대구구치소 복지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 채용예정일은 채용 절차 등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담당업무

- 급식담당자의 지도를 받아 직원 급식 제공 등 급식 관리
- 직원식당 위생 등 환경관리, 식자재 및 비품 관리
- 기타 관련 규정 및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등

2. 근무 체계

- 근무시간 : 1일 8시간(3개조 순환근무)

 - 조간 근무 : 06:00 ~ 15:00(8시간, 휴게시간 1시간)
 - 정상 근무 : 07:00 ~ 16:00(8시간, 휴게시간 1시간)

- 잔업 근무 : 09:30 ~ 18:30(8시간, 휴게시간 1시간)

※ 단, 출·퇴근 시간 등은 직원식당 운용계획에 따른 탄력적 운영, 토 · 일요일(공휴일 포함)은 순번에 따라 근무

※ 근무시간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구치소 복지과 문의(☎053-740-5252)

※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근로기준법」및「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등에 따름

3.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법률 제21533호)
-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법무부훈령 제1601호)
- 「법무부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법무부훈령 제1620호)

4. 응시 자격

□ 공통 자격 **※ 적용기준일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 18세 이상인 자로(2008. 12. 31. 이전 출생자) 공고일(2026. 11. 10.) 기준 인사관리 규정상 정년(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단, 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 포기하여야 함)
-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역의 제한은 없으나 휴일근무가 가능하고, 근무체계에 따른 조기출근 등 대구구치소 출퇴근이 가능한 자
-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8조,「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①「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5. 우대사항 및 가점 사항

□ 우대사항 및 가점 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5배수를 초과한 경우)에서만 적용함

가. 우대사항 ※ 적용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구분	우대사항(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및 경력)
공무직 (조리원)	✦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2] '조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상위 1개만 인정) - 산업기사 : 한식조리, 중식조리, 양식조리, 일식조리, 복어조리 - 기 능 사 : 한식조리, 중식조리, 양식조리, 일식조리, 복어조리 ✦ 조리 관련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 연차별 차등 배점) - '조리' 분야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만 인정 - 2개 이상의 관련 경력이 있는 경우 일 단위까지 합산하여 인정하되, 일 단위는 15일 이상인 경우만 1월로 인정함(합산 1년 이상 경력 사항만 인정)

※ 경력은 '조리'분야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만 인정(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경력 인정은 소득금액증명원, 4대 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경력(재직)증명서 세 가지 모두 제출하고 제출서류에서 근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

나. 가점 사항 ※ 적용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구분		부가 점수
법정 가점	「국가유공자법」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미적용
사회 형평 가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서류전형에서 만점의 3%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금번 채용은 모집인원이 1명으로 법정가점 미적용)

※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원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귀책임

6. 급여 및 후생복지

- 보수 수준 : 월 보수 2,155,880원(세전, 초과·휴일수당 등 별도)
- 정액급식비 : 매월 160,000원
- 명절휴가비 : 기본급의 60% × 연 2회
 - '26년 기본급 기준 1회 지급액 : 1,293,530원
- 맞춤형복지비 : 500,000원 × 연 1회
- 근무복 등 피복류 제공
-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등
- 처우 개선 사항(2026년)
 - **(기본급 인상)** 전년 대비 3.8%
 - **(정액급식비 인상)** 전년 대비 월 2만원 인상(14만원 → 16만원 인상)
 - **(명절휴가비 인상)** 그간 연 2회 550,000원 정액 지급하던 휴가비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연 2회 기본급의 60%**로 인상

※ 기타 복지후생 등 그 외의 사항은「근로기준법」및「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지침」등에 따름

7. 채용 절차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결정
26.11.10(화) ~26.11.20(금)		26.11.18(수) ~26.11.20(금)		(발표일) 26.11.26(목)		26.12.02(수)		(발표일) 26.12.04(금)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소극적 서류전형']을 원칙으로 함

-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5배수 이하일 경우(**소극적 서류전형**)
 - 공고된 응시자의 자격·제출서류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부적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모두 합격
-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5배수를 초과한 경우(**적극적 서류 전형**)

- 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평정 성적이 높은 자 순으로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단, 동점자는 전원 합격 처리)

※ 적극적 서류전형 심사기준

구분	주용 내용	배점
자기소개서	■ 근로자로서의 소양(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평가)	40점
관련분야 경력	■ 1년 이상, 경력 기간별 차등 적용	30점
관련분야 자격증	■ 조리사 자격증 : 상위자격증에 차등 적용, 상위자격증 1개 인정	30점
가산점	■ 사회형평가점	3점

나. 2차 시험 : 면접전형 (대상자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평정요소를 '상', '중', '하'로 계량화하여 평가

면접전형 평정요소	
①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 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다.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 면접전형 평정 우수자 순위로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전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결정)

※ 불합격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했을 때(단, 면접위원이 2명일 경우 위원 전원으로 함)

-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 실시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발생 등을 대비하여 최종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내에서 예비합격자를 선발 가능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예비(추가)합격자로 결정

- 예비합격자 임용 유효기한은 최종합격자 채용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단,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 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

8. 전형 일정

구 분	일 정	비고
채용공고 기간	'26.11.10.(화) ~ 11.20.(금)	법무부, 나라일터 홈페이지 공고
원서접수 기간	'26.11.18.(수) ~ 11.20.(금)	우편 및 방문접수
서류전형	'26.11.25.(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	'26.11.26.(목)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면접시험(예정)일	'26.12.2.(수)	대구구치소 청사 2층 세미나실
최종합격자 발표일	'26.12.4.(금)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채용후보자 등록	'26.12.9.(수)~12.11.(금)	대구구치소 총무과
채용 예정일	'27.1.4.(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무 개시

※ 채용공고는 법무부(www.moj.go.kr)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서류전형 합격자·면접일정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니 응시자는 시험일정을 반드시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응시원서 접수

□ 원서 접수 기간 : 2026. 11. 18.(수) 09:00 ~ 11. 20.(금) 18:00

- 원서 접수 방법 : 방문 접수 및 등기우편

※ 접수 기간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등기우편)에 한하여 유효하며, 대리접수 가능(퀵, 택배 불가)

- 원서 교부 : 법무부 또는 나라일터 홈페이지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작성
- 응시원서 접수처 : **대구구치소 총무과**

 – 주소 : (우)42066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541길 36

※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가 지게 됩니다. 제출서류 미비 등의 보완을 위해 가급적 방문 접수 바랍니다.

10. 제출서류 안내

* 아래 제출서류는 서류전형시 자격요건 충족여부 심사의 근거자료가 되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사항은 증빙자료 제출 건에 한하여 인정됨
* 제출서류는 번호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스테이플러 미사용)**

※ 응시자 제출서류는 증빙서류 검증 과정에서 필요 시 일부 추가 요구 등 변동 가능

구분	서류	비고
공통사항 (필수 제출)	제출서류 총괄표 1부(제출내역 체크 후 자필서명)	○ 별지서식 제1호
	응시원서 1부(서명 자필,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 별지서식 제2호
	이력서 1부	○ 별지서식 제3호
	자기소개서 1부(A4 2매 이내로 작성)	○ 별지서식 제4호
	주민등록등본(모두) 및 초본(남성만) 각 1부 **※ 주민등록초본은 남성에 한하며, 반드시 병역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생년월일만 표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별지서식 제5호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1부	○ 별지서식 제6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 별지서식 제7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별지서식 제8호
	공정채용확인서 1부	○ 별지서식 제9호
해당자에 한함	관련 업무 경력(재직)증명서 사본 1부 ※ 경력 사실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간, 직위(또는 직급),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발급기관(회사)명(직인)과 확인 가능한 연락처가 명시된 유효기간 내의 증명서만 인정	

구분	서류	비고
	4대 보험 자격 득실이력 확인서 중 1종 1부	○ 관련 업무 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소득금액 증명서(전 근무기간)	
	한식·양식·중식·일식 등 조리 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사본 1부	
	사회형평가점 관련 증명서류 1부(수급(지원)기간 명시)	

11. 유의사항

□ 채용서류 반환 관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부터 30일간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별지서식 제10호)"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반환 청구기간 : 2026. 12. 11.(금) ~ 2027. 1 .10.(일)
※ 다만, 채용절차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응시자가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한 경우에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청구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청구기한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 단, 인사감사 등 채용 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에 관한 정보는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보관

□ 채용비리 관련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규정 제25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를 실시합니다.

□ 기타 유의사항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 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응시원서 기재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전형 응시 불가)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에 기재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생년월일 등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심사위원에게 제공됩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조회, 신체검사 결과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는 접수 마감기한('26. 11. 20.(금) 18시까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매 채용 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 지참 바랍니다. (미지참 시 응시 불가)

 *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포함, 유효기간 내)
- 본 채용 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입니다.

☎ 채용 관련 문의 : 대구구치소 총무과 인사팀(053-740-5203/5208)

<별지서식 제1호>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응시번호
* 접수담당기재

채용분야	성명	연락처
공무직근로자 (조리원)		* 핸드폰 번호

☐ 제출여부에 ✓표시 후 아래 순서대로 제출

번호	제출서류명	필수여부	제출여부
1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필수	☐
2	응시원서	필수	☐
3	이력서	필수	☐
4	자기소개서	필수	☐
5	주민등록등본 1부(남성은 병역사항 기재된 초본 추가 1부)	필수	☐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필수	☐
7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필수	☐
8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필수	☐
9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필수	☐
10	공정채용확인서	필수	☐
11	관련 업무 경력(재직)증명서	해당자만	☐
12	4대 보험 자격 득실이력 확인서 중 1종	해당자만	☐
13	소득금액 증명서	해당자만	☐
14	관련 분야 자격증 사본	해당자만	☐
15	가산조건 관련 사회형평가점 증명	해당자만	☐

2026. . .

성명 : (서명)

대구구치소장 귀하

<별지서식 제2호>

응 시 원 서

본인은 대구구치소 시행 2026년 제4회 공무직근로자(조리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구구치소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분야	**공무직근로자(조리원)**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 예 □ 아니오
주 소	(㉮)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2026년 제4회 공무직근로자(조리원) 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분야**	**공무직근로자(조리원)**
성명	(한글) (한자)		
2026년 월 일 대구구치소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시험일 전일까지 대구구치소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도착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 시 원 서 작 성 요 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는 반드시 소정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
3.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 응시분야 : 공무직근로자(조리원)

4.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5.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6.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별지서식 제3호>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응시번호	채용담당자 기재란	응시기관	대구구치소	응시분야	공무직근로자(조리원)	성명	
주소					연락처		
병역사항	□ 필 □ 미필 □ 면제 □ 해당사항 없음					생년월일	

나. 우대사항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일	자격 검정기관	
경력	근무기관(부서명)	근무기간(근무 연·월수)	직위(직급)	담당업무

다. 가점사항	
가산요건	□ 사회형평가점 해당 여부
	□ 장애인, □ 저소득층, □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별지서식 제4호>

자 기 소 개 서

☐ 응시기관 : 대구구치소	☐ 응시분야 : 공무직근로자(조리원)
☐ 성　　명 :	☐ 생년월일 :

* 작성하실 때 아래 내용은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1. 자기소개서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성격의 장·단점, 직장구성원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 앞으로의 각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합니다.
2.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합니다.
 (폰트는 휴먼명조, 글씨크기 13, 줄간격 160mm, 글자색 : 검정색)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명은 반드시 자필로 서명합니다.

2025.　.　.　작 성 자 :　　(서명)

<별지서식 제5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대구구치소는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수상실적, 경력·재직사항, 가족사항, 차량번호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대구구치소장 귀하

<별지서식 제6호>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2026년 제4회 대구구치소 공무직근로자(조리원) 채용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규정제22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0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대구구치소장 귀하

<별지서식 제7호>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해당 □ 비해당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해당	해당 □ 비해당 □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3-2. 위 **퇴직일**(당연퇴직 · 파면 · 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해당 □ 비해당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해당 □ 비해당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해당 □ 비해당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20 년 월 일

생년월일 . . . 지 원 자 (서명)

대구구치소장 귀하

<별지서식 제8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성 명		응시기관	대구구치소
생년월일	. . .	채용분야	공무직(조리원)

본인은 법무부 대구구치소에서 시행하는 제4회 공무직 근로자(조리원)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대구구치소가 **실시하는 자격, 경력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대구구치소장 귀하

<별지서식 제9호>

공정채용 확인서

(응시자용)

작성자 인적사항

생년월일 :

성 명 :

※ 다음 표의 확인사항에 대해 해당여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확 인 사 항	해당여부	
	예	아니오
본인과 본인의 가족은 법무부의 채용과정에서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하여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있습니까?	□	□
본인의 친인척이 법무부에 재직 중에 있습니까?	□	□
재직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있다면 해당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생각합니까?	□	□
친인척 관계있는 직원은 몇 촌 이내이며, 근무부서 및 이름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촌 이내 / 소속기관 : 근무부서 : 이름 :		

본인은 위의 확인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어떠한 방식으로든 적극적 채용 개입이나 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채용이 취소됨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 인지하지 못한 친·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서명 (인)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고지
① 수집 · 이용목적 : 채용경로 조사 및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지침」 이행을 위한 채용비리 여부 조사, 감사자료 작성
② 수집 · 이용항목 : 성명, 소속, 직종, 소속기관 입사일자, 법무부 직원과의 관계 및 해당 직원 소속·성명
③ 보유기간 : 재직기간 동안 보유

대구구치소장 귀하

<별지서식 제10호>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대구구치소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